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천안함 장병 등 지원〉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10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4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5
3. 주요 조문별 검토	9
1) 생활지원금(안 제6조)	9
2) 심리상담 등의 지원(안 제8조)	12
3) 취업지원(안 제10조)	15
4)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11조)	18
5) 벌칙규정(안 제13조)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하여 천안함 승선 장병 및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방지하여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총 13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지원의 원칙)

제6조(생활지원금)

제7조(의료지원)

제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9조(교육비 지원)

제10조(취업지원)

제11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천안함재단에의 출연 등)

제13조(벌칙)

<부 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가. 제정안에 대한 논의 배경 및 총괄 검토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천안함의 생존 장병 58명 중 22명은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으며, 나머지 36명은 군을 전역하였으며, 천안함 피격사건 사망자는 46명임.¹⁾

[표 1]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24. 7. 4. 현재)

구 분	계	생 존 장 병						사망
		현역 복무	전 역 자					
			소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미신청	
				등 록	미등록	심사 중		
합 계	179	29	96	69	6	3	18	54
천안함 폭침	104	22	36	28	2	3	3	46
제1연평해전	31	2	29	13	2	0	14	0
제2연평해전	26	5	15	14	0	0	1	6
연평도 포격도발	18	0	16	14	2	0	0	2

※ 자료: 국가보훈부

천안함 생존장병 중 군을 전역한 장병 24명에 대한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21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진단받거나 진단 뒤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12명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이들 중 실제 6명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것임.²⁾

1) 2023년 3월 기준 군을 전역한 35명 중 26명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으며, 5명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2명은 심사 중이며 2명은 미등록 중임.

2) 한겨레,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2018.7.17.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2018년 군을 전역한 천안함 생존장병 24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처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북한의 피격으로 침몰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왜곡하고 그 생존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현재의 국가유공자 지원체계와는 별개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천안함 생존 장병 등에 대해 별도로 지원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표 2] 천안함 생존 현역 장병 및 제대군인 관련 현 지원제도

구분	현역 장병 (국방부)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대 상	22명	국가유공자 등록자(28명), 미등록자(2명), 심사 중(3명), 미신청(3명)
생활지원금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 지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군 병원 등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 실시 「군인재해보상법」 제20조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보훈부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 실시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 진료미종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진료비 무료)
심리상담 지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4조 군 생활 고충 상담 등 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실시
교육비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가유공자 인정 시 교육비 지원

구분	현역 장병 (국방부)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취업 지원	「군인사법」 제46조의2 전역하는 사람에 대해 전직지원교육 실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지원, 우선 고용, 창업 등 지원
주택 우선공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 하여 주택 우선공급 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 하여 주택 우선공급 가능
천안함 재단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인가 * 2010.11.30. 설립인가 및 등기

※ 자료: 국방부

국가에 헌신한 생존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 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생존 장병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의 주된 내용인 생활지원금·의료·교육비·취업·심리 상담 지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 활용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나. 관계부처 의견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상자는 생존장병 중 현역 및 전역,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국방부는 생존장병 중 ‘현역’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보훈부는 생존장병 중 ‘전역자, 사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현행 지원체계를 고려할 때, 생존장병 중 현역(전역·퇴직 후 국가유공자 여부 심사), 전역자(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가 아닌자), 사망자의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국가보훈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해야 하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신설 등은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기존 법과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1) 생활지원금(안 제6조)

제정안은 국가가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6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방법 및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생활지원금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에서 생활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 유사 입법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 (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5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생존 장병 중 현역의 경우 국가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바, 추가적인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³⁾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자녀,

3) 국방부는 생존 장병 중 현역(지급可)이 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지급不可)되는 경우와 같이 법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6조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지급 수준을 검토하는 경우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 보상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⁴⁾

□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지원의 필요성과 생존 장병 중 현역은 국가로부터 매월 보수를 받고 있는 점, 전역자 중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4) 국가보훈부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보훈급여금(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중위소득 50% 이하, 242~370천원 지급
-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80세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100천원 지급
-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보상금 비대상자) 중위소득 70% 이하, 345~478천원 지급

2) 심리상담 등의 지원(안 제8조)

제정안은 천안함 생존 장병 등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이 생존 장병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봄.

다만, 현역군인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⁵⁾, 전역군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지원⁶⁾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4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지원⁷⁾ 등 기존 제도 내에서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4.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표 4] 현 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제도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현역군인	의료지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군병원 등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 실시
		「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심리상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군 생활의 고충에 대한 상담 등 시행
전역군인	의료지원	「국방환자관리훈령」 제51조(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 ·진료미종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 진료비는 현역과 동일하게 무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 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실시 ·전상군경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 실시 ·전상군경 중 상이등급 미만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외의 질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심리상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제대군인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실시
유족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 실시
	심리상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천안함 피격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 중 현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제정안 내용에 동의하나, 생존 장병 중 제대군인, 유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국가보훈부의 신중검토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기존 법과 제도 내에서 충분한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⁸⁾

[표 5] 국가보훈부의 서해수호장병 심리상담 지원경과

- (2012년) 중앙보훈병원에서 천안함 생존장병 중 검사 희망자 9명에 대한 PTSD 검사 실시(PTSD진단無, 우울증 외 4명)
- (2018년) 천안함 생존장병 32명에 대해서 심리치료 의향조사 → 희망자 5명, 임상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 '19년 1명 전역하여 인원 33명으로 증가
- (2019년) 심리재활 상담 제도 안내 및 임상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 * 상반기: 제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유족 32명에 대한 제도 안내(명상책자 등 송부)
 - * 하반기: 천안함 생존장병 중 상담을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2명에 대해 임상전문가 상담 계속 지원(회당 10만원, 10회 지원)
- (2020년~현재) 매년 서해수호 관련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을 위해 안내책자 및 격려물품(심신수련 책자, 재활관련 용품) 전달

8) 국가보훈부는 ① 생존장병 전역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가능, ② 생존장병 전역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③ 사망장병의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제도가 있다고 설명함.

3) 취업지원(안 제10조)

제정안은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과 채용시험에 대한 5퍼센트 가점 부여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존 장병의 취업을 촉진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 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천안함 예비역전우회가 예비역 생존 장병 17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을 조사했을 때 8명의 생존 장병이 취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취업지원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임.⁹⁾

이에 제정안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것과 동일하게 채용시험 시 가점을 주고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용이하게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다만, 천안함 생존 장병의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채용시험 시 가점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여성·장애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⁰⁾

□ 국방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생존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생존장병 중 ‘현역장병’의 경우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 교육)에 의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9) 동아일보, 「“천안함 폭침,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 2020.3.26일자

10)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평등권(제11조), 공무담임권(제25조) 및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표 6] 취업지원 관련 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현역군인 취업지원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 교육 실시
전역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4조(취업지원 등),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17조(창업지원) 및 제18조의2(전직지원금)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우선 고용, 창업 등 지원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생존 장병¹¹⁾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만 상이등급 미달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와의 중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10조제2항에서 취업지원 방법으로 채용시험 만점의 5%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정으로 폐지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따른 요건 심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훈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11) 생존장병 중에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현역복무 중인 자도 포함되어 있음

4)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11조)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민·민영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현재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소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10년 이상 복무 중인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7] 현행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생략)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2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주택의 우선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하여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상이등급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법령으로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므로 제정안의 주택 우선공급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²⁾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28.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5) 벌칙규정(안 제13조)

제정안은 벌칙 규정을 통하여 거짓으로 동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과 천안함 피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축소·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 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다. 그 밖에 공공연하게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정안 제13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관계 입법례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¹³⁾

□ 다음으로, 제정안 제13조제1항제2호는 천안함 피격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생존장병 등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천안함 피격과 관련하여 북한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 암초에 좌초되었다거나,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하여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으로 모욕하는 등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부인·비방·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 희생자와 생존 장병 및 그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앞장서서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더 이상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제정안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언비어의 유포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 다만,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¹⁴⁾

□ 국방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반 명예훼손 등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적 사건마다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도 있음에 따라 제1항제2호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최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안과 유사하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개정(2021. 1. 5.)한 바 있고, 처벌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14)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

15) 다만, 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데 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304